

중소기업 *focus*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

- 2015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2) -

발간주제

31호 : 2014 하반기 시행 및 2015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1)
32호 : 2015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2)

1

하나.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2015 달라지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 확대 ● 60세, 임의정년에서 법정정년제도로 의무화
--------------	--

■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 및 적용단가 변경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또한 2015년에 적용할 부담기초액이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최대 월 최저임금액인 1,166,220원까지 부과

종전내용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① 3/4이상 : 미달인원 1명당 월 760,000원 ② 1/2이상 ~ 3/4미만 : 월 837,500원 ③ 1/2 미만 : 월 1,005,000원 ④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 1,088,890원
달라지는 내용	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① 3/4이상 : 미달인원 1명당 월 710,000원 ② 1/2이상 ~ 3/4미만 : 월 781,000원 ③ 1/4이상 ~ 1/2미만 : 월 852,000원 ④ 1/4미만 : 월 923,000원 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 1,166,220원
관련규정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7호)

-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고용비율은 2.7%이며 이러한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을 고용하는 때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상시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수혜대상자의 범위 확대**

· **(월 보수기준 확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내용)**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50% 지원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 지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금 예시 : 월보수
100만원 기준시 연간
지원금액
· 근로자 : 309,000원
· 사업주 : 324,000원
- 근로자 :
고용보험료 78,000
원 중 39,000원 지원
국민연금 540,000원
중 270,000원 지원
- 사업주 :
고용보험료 108,000
원 중 54,000원 지원
국민연금 540,000원
중 270,000원 지원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법인인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공공기관 제외)
근로자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이하 근로자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4)**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전에는 육아휴직 미사용일수 한도 내에서 허용되었으나, 2015. 7. 1. 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일 수의 2배의(즉 최대 2년) 한도내에서 허용됨

☞ 예시) 현행법상 최대 1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 휴직 기간중 실제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종전에는 9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였으나, 2015. 7. 1. 부터는 18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도 최대 1회 분할 사용에서 최대 2회 분할 사용(즉, 최대 3회사용)으로 개정되어 분할사용 횟수도 확대되었음

☞ 법적 청구권이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 최대 1년)는 2011. 9월 시행하고 있으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재정지원 시행

■ **임금피크제 지원강화**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확대 : 사업주 지원 신설(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지원 가능
- 근로자 지원 :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되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된 근로자
-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 감액 부분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로부터 최대 5년간 년 500만원 한도 지원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 상향 : 연간 840만원 → 1,080만원**

-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지원 가능
- 근로자 지원 :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또는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56세 이후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 감액 부분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로부터 최대 5년간 년 1,080만원 한도 지원
- 임금감액률 :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 ~ 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없이 10% 이상 감액)

☞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또는 월) 다음달 말일까지) 임금피크제 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지원금 부정수급시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령하며, 또한 반환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

- **전환형** : 육아, 가족 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 **채용형** : 지금까지 최저임금 130% 이상을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현실화하고,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설
- **개선형** :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

구분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요건 현실화		·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130% 이상 → 120% 이상으로 요건 하향 조정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① 최저임금 130%지급시 : 월 80만원 한도 지원 ② 최저임금 120% ~ 130% 미만 지급시 : 월40만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소용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 시간선택제 변경시 1년간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50% 지원, 월 50만원 한도 ·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전환수당 등
	간접노무비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소요비용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지원비	대체인력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 지원, 월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
근로조건 개선지원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무기계약 전환, 최저임금 120% 지급, 주15 ~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 (근로시간 비례원칙 적용)

- ☞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또는 월 다음달 말일까지) 임금피크제 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전환장려금 계산 예시

- ☞ 주 40시간 근로, 월 임금 20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를 전환하여, 주 30시간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비례임금은 150만원이며, 인센티브는 30만원으로 지원금은 매월 15만원임

2

둘. 60세, 임의 정년제에서 법정 정년제도로

● 지금까지 정년은 임의제도였으나 법정정년으로 의무화

-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법정 정년제도가 시행
- (법적근거)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와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됨
- 즉 회사는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고령자법 제19조(정년)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정무정년준수의무를 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하여 법정정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 이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음
-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 ☞ 고령자법의 법정무정년제도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조항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는 효력조항 및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판결

법정정년제도는 낮게 정해진 정년을 법으로 정하여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정년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정정년제도를 이유로 한 정년신설은 근로기준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정년이 없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법정정년제도 시행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정년을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윤종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홈페이지 www.gsbc.or.kr

자료문의 평가조사실
031-259-7365

「중소기업 포커스」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